

규칙 신·구 대비표

조 항	신	구	비고				
제11조 의2 【생활지 도 기준】	1. 유치원 생활지도 기준은 「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를 따른다 2. 유치원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 [분리보관 가능한 물품]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분리장소 및 분리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요 건</th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분리장소 및 분리방법	요 건		
		분리장소 및 분리방법					
	요 건						
1	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(칼, 가위,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, 장난감 칼, 총, 공구, 레이저 포인터, 화학약품 등)	발견 즉시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유아 귀가 시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반환합니다.					
2	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술, 담배, 분드, 부탄가스, 마약류 등)						
3	기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-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(고가의 장난감, 고액의 현금,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)						

조 항	신	구	비고
제11조 【수업 운영방법】	<p>3.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하고, 교외체험학습일을 수업일로 인정한다.</p> <p>4. 교외체험학습일수는 당해 연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의 교외체험인정계획에 따른다.</p>	<p>3.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외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외 현장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하고, 원외 현장학습 일을 수업일로 인정한다.</p> <p>4. 원외 현장학습일수는 당해 연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의 교외체험인정계획에 따른다.</p>	
제6장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입학 · 재입학 · 편입학 · 전학 · 퇴학 · 휴학 · 수료 및 졸업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입학 · 전학 · 퇴학 및 수료 · 졸업</p>	
제14조 【재 입학 · 편입학 · 전학 등】	<p>1. 학기 도중에 본원에 입학 · 재입학 ·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,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순번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다.</p> <p>2. 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전학 또는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, 원장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	<p>1. 학기 도중에 본원에 입학, 전입학, 편입학, 재입학 하고자 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,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순번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다.</p> <p>2. 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학 또는 퇴학 하고자 하는 경우, 원장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</p>	
제16조의 2 【휴학】	<p>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사정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, 원장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
제22조 【직원의 배치기준】	<p>본원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12명을 둘 수 있다.</p>	<p>본원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3명을 둘 수 있다.</p>	